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0. 10. 26.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이나 시설이용(체육 시설)을 위한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령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실제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종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신규허가시 차령 6년이내를 폐지하고, 기본차령(9년)을 적용토록 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18. 공포, 2021.1.1.시행)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광역지자체(시·도)로 지정한 사무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이양함에 따라 이에 맞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고·대학교 및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최초 허가시 차령제한(6년)을 폐지(안 제103조 제4호 다목 및 제103조제4호의2 다목)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사무 위임(안 제74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사무 위임(안 제7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 사무 위임(안 제7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사무 위임(안 제77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사무 위임(안 제78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의 변경인가 사무 위임(안 제87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아. 여객자동차터미널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사무위임(안 제109조)

시·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6조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7조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8조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3조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호의2다목 중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각각 “차령”으로 한다.

제109조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 ----- ----- ----- ----- ----- -----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u>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u>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	----- ---- <u>시장·군수·구청장</u>---- -----. 1. ~ 3. (현행과 같음)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 ----- ----- ----- -----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 ----- ----- ----- -----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
---	--

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u>시·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제87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u>시·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 ----- ----- ----- ----- ----- -----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 ----- -----

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제103조의2에 따른 <u>차령</u>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차령</u> ----- ----- -----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제103조의2에 따른 <u>차령</u>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차령</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

· 시행) <u>시·도지사</u>는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24